

## 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: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(소득공제자용)

2. 시행일 : 2023 년 1 월 1 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### 4. 변경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<p><b>제 3 조(저축가입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벤처펀드저축은 <u>2022 년 12 월 31 일</u>(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)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</p>	<p><b>제 3 조(저축가입)</b></p> <p>① &lt;좌동&gt;</p> <p>② 벤처펀드저축은 <b>2025 년 12 월 31 일</b>(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)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</p>	<p>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 1 항 개정내용 반영 - 적용기한 연장</p>
<p><b>제 4 조(세제혜택)</b></p> <p>① 저축자는 <u>2022 년 12 월 31 일</u>까지 투자(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)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(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의 최대 3 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<b>제 4 조(세제혜택)</b></p> <p>① 저축자는 <b>2025 년 12 월 31 일</b>까지 투자(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)한 벤처펀드저축 합계액(해당 저축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펀드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)의 최대 3 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%를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저축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</p> <p>② &lt;좌동&gt;</p>	
<p>&lt;부칙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&lt;부칙&gt;</p> <p><b>2. 개정규정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</b></p>	